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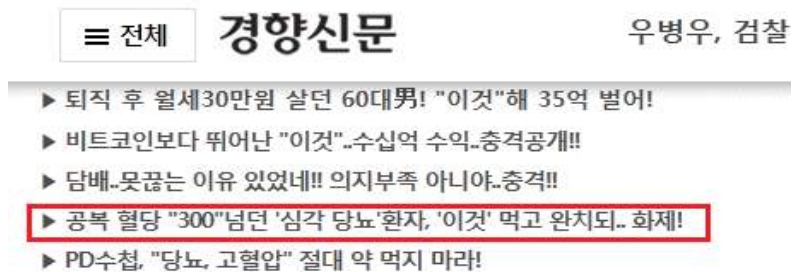
결 정

2018 - 4030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8년 1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 「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화제!」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8. 1. 29. 21:46 캡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91723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경향신문은 건강기능식품인 ‘당사랑 프리미엄골드’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화제!」 라고 달아 마치 당뇨병 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완치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http://jdaily.co.kr/product/dangsarang3/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054&pdCd=AC1710200000002>>

상담문의

I [화제] “당뇨,합병증” 치유에 도움 주는 新물질 출시..화제!

- 기존 혈당관리 성분에 “호로파씨앗” 성분을 추가한 제품!!
- 해외에서 이미 각종 연구로 검증받은 “바나바추출물”
- 전국 1000만명 당뇨병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

한번 걸리면 죽을때까지 치료하지 못한다는 평생 고통의 병 당뇨는 고령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으로만 알려졌던 것이 요즘은 스트레스와 식습관의 변경 등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당뇨 환자가 1000만명이 넘어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신약과 약재 개발에 한창이지만 아직 완치의 길은 먼듯하다.

당뇨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데, 당뇨환자들은 대체적으로 합병증의 여파로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고 한다. 신장기능과 당노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당사랑 프리미엄골드’가 첫 등장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나의 건강상태 무료진단 체크해보기! 100%무료체험 선착순 이벤트!!

이름

나이 세

연락처 010

무료가격알아보기!



2018년 3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박 재 현	朴宰玄
장 인 철	張仁철
김 규 식	金圭식
강 희	姜熙
하 윤 수	夏潤수
김 영 모	金英模
박 미 경	朴美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
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